

의안번호	제 330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3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송은섭 의원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17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은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
----------	-----

발의연월일 : 2009. 3. 17.

발 의 자 : 송은섭 · 이영복 · 박종갑 ·

권광택 · 박영웅 · 심홍섭 ·

민경환

1. 제안이유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를 이용한 토종가축의 보급·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토종가축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 토종가축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체계적 개체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총괄기관 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토종가축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 명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2009년 1차 추경에 13,000천원 반영되었음

다. 관련부서 협의 :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대대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취소, 흑소 포함), 돼지, 닭 등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토종가축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급·육성시 필요한 경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토종가축의 효율적인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총괄기관의 장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소유자가 토종가축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종가축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육실태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사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도내 토종가축의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토종가축의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